한국어학당 운영규정

제정 2022.07.08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국어학당(이하 ‘어학당’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어학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한국어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
2. 한국어교육과정 개발
3.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운영
4. 외부 관련 기관과 공동연구 및 협력
5. 기타 어학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원장) 어학당에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4조(조직) 어학당에는 강의, 연구, 행정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,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업의 진행 및 강사진 관리
2.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행
3.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용에 따른 행정지원 업무 및 타 부서와의 협조사항
4. 기타 어학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

제5조(강사) ① 강사는 학사학위 이상으로 한국어 강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위촉한다.

② 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총장은 그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특별 위촉할 수 있다.

1. 한국어 교육의 성질상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기 어려울 때
2. 자격 미달자라도 관련계통의 권위자로서 교육경력이 있을 때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어학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학당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

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운영계획
2.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3.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
4. 등록금, 강사료 책정 등에 관한 사항
5. 기타 어학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 2 장 입 학

제7조(자격) 어학당의 한국어교육과정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, 국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가능한 외국인 어학연수생(이하 '연수생'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8조(절차) 연수생의 한국어교육과정(이하 '과정'이라 한다) 입학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교육부의 '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' 및 출입국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한다.

1. 원서접수
2. 서류심사
3. 서류심사 결과 통보
4. 등록금 납부
5. 표준입학허가서 발생
6. 비자 신청
7. 입국

제9조(입학허가 및 취소) ① 연수생의 한국어교육과정 입학허가는 제8조의 절차에 의해 허가되며, 제출된 서류가 위·변조된 서류인 경우에는 입학 이후에도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.

② 입학허가를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직접 대면면접 또는 화상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
제 3 장 학 사

제10조(수업 및 교과과정) 한국어교육과정의 수업 및 교과과정·학사운영에 관해서는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등록 및 수강신청) ① 수강을 원하는 연수생은 등록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이 과정의 등록금 책정,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장 교 육

제12조(교육과정) 이 과정은 1년에 4개 학기 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.

제13조(교육시간) 이 과정은 매학기 주 5일 10주 동안 총 2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과정 내에 문화체험 및 문화답사 수업이 포함될 수 있다.

제14조(등급) 이 과정에 수강하는 연수생은 어학당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평가를 통하여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 능력별 수업을 받는다.

제15조(수업정원) 각 반별 수업정원은 15명 내외로 한다.

제16조(출결 및 수료) 이 과정에 등록한 연수생은 총 수업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, 80%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한다.

제 5 장 장학 제도

제17조(장학금) 이 과정에 등록한 연수생에게는 어학당의 지침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장 보 칙

제18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